

다함께 만드는 따뜻한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만들어 갑니다.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성희롱, 성폭력이라 판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하여 일시적 업무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조치 등)



**공단 운영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전용전화**
033-811-2282

임금, 실업, 근로환경, 성희롱 등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 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366 | 국가인권위원회 ☎1331

‘상호존중’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QR 코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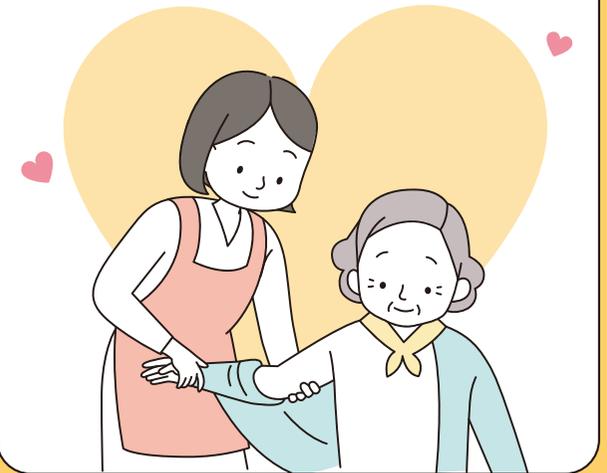
장기요양
웹진 소식지



고객상담전화

1577-1000

요양보호사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는 돌봄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을 돌보는
우리 모두의 **돌봄전문가**
요양보호사

Step 1.

지정 교육과정 이수

Step 2.

국가시험 응시

Step 3.

국가자격증 취득

Step 4.

**지속적인 보수·전문
교육 수료**



**아줌마 No,
요양보호사님**
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업무를 해요!



• **신체활동 지원**

- 식사하기, 체위변경 및 이동하기, 화장실이용 등
- 개인위생활동 및 몸단장,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 **인지활동 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 등

• **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주변정돈, 식사준비 등
- 말벗, 의사소통 도움, 외출 동행 등

이런 업무는 하지 않아요!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가족을 위한 가사도움, 업무지원
- 김장, 차례, 집안 경조사 지원 등

•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가게 청소, 배달, 부업에 참여 등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잔디깎기, 텃밭매기 등
- ※ 업무범위 안에서의 ‘돌봄’만을 제공함

장기요양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간 **상호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요**

공단은 ‘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동의서”란?

“재가 장기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에 포함된 서식 중 하나로,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동의서입니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2년 재가장기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에서 상세내용 확인 가능